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60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 송석준·최승재·배준영

김선교・성일종・이 영

이철규 · 박성중 · 소병훈

유상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 고등·평생·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, 4차 산 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기 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.

하지만,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있고,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, 「고등교육법」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실정임. 또한,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시설·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학교는 비

적용 대상임.

이에 기존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,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,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교육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"방송통신대학교"라 한다)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(안 제2조).
- 다. 국민의 학습권 보장,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라. 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, 부총장, 교원 등의 운영기준,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둠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.
- 마.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 등과 단과대학, 부속시설 등, 하부조직에 대한 규정을 둠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.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「교육기본법」 제9조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(이하 "방송통신대학교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조(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)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학습권 보장,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·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·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고등교육법」,「교육공무원법」,「국립대학의

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- 제5조(학교의 장)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.
 -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- 제6조(부총장)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.
 -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제7조(교원 등의 운영기준)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의 운 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공무원의 정원)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수업 등)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,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.
 - ② 그 밖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- 제10조(단과대학 등)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학과 및 학부 등을 둘 수 있다.

- ② 방송통신대학교에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,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·대학원 및 학과·학부 등에 장을 두되,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, 학과· 학부의 장은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.
- ④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, 학과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·대학원 및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, 학생을 지도한다.
- ⑤ 그 밖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부속시설 등)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·연구시설·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 (이하 "부속시설등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- ② 방송통신대학교에 지역 학생들의 수업·시험 업무, 학적관리 및 입학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캠퍼스를 둘 수 있다.
 - ③ 부속시설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하부조직)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

다.

②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.
- 제3조(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.
- 제4조(교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 대학교에 재직 중인 총장·교원·직원 및 조교는 이 법에 따른 한 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·교원·직원 및 조교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8조제1호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- 제5조(권리와 의무의 승계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속

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승계한다.